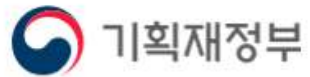


최종보고서



2022년 HSK 개정에 따른 양허관세율표 개편안 연구

2021. 09. 1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2022년 HSK 개정에 따른 양허관세율표
개편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 조 훈 구

연구기간 : 2021.07.19. ~ 2021.09.19.

연 구 진 :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하 정 주
	연 구 원	송 왕 근
	연 구 원	이 우 성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1
3. 연구 대상	3
II. 연구 수행 방법론	6
1. 단계별 수행 흐름	6
2. 기본 수행방법	7
3. HSK 개정 유형	8
4. 항목별 개정 수행 방법론	10
5. 연계정보파일 활용	12
6. 정확성 확보 방안	14
III. 수행 결과 요약	15
1. 초안 제출 완료	15
2. 수행결과 총요약표	16
IV. 주요 쟁점 : 유형	17
1. 유형 1 : 대시 라인 및 품명 설정	17
2. 유형 2 : HSK 내에 HSK로 표현된 품명	17
3. 기타 사항 : ex 품목의 문제	19

V. 주요 쟁점 : WTO 별표 1 가20

1. 신설 3002.90-9000	20
2. 신설 3006.93-0000	21
3. 신설 8485	22
4. 주1, 주2	24
5. 2021 8537.10-9000	31
6. 연계표 확정 후 수행할 부분	32

VI. 주요 쟁점 : 별표 3(APTA) 가33

1. 신설 2811.19-9000	33
2. 신설 2852.10-0000	34
3. 순삭제 8419.39-1000	36
4. 신설 8479.83-0000	38
5. 신설 8485.90-0000	39
6. 신설 2852.90-9000 : 2015 HSK로 표기된 품명	41
7. 신설 8542.31-4000 등 5개 HSK	45
8. 연계표 확정 후 수행할 부분	56

VII. 주요 쟁점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57

1. 쟁점 개요	57
2. 신설 1602.90-9000	57
3. 연계표 확정 후 수행할 부분	58

VIII. 주요 쟁점 : GSTP, TNDC59

1. GSTP, TNDC 현황	59
------------------------	----

2. 쟁점 : 규정 형식	59
---------------------	----

IX. 결 론60

1. 연구 요약 : 초안 제출 완료	60
2. 향후 방향 : 보완	60

참고문헌 63

<붙임 1> HSK 개정 경과 및 연혁 64

<붙임 2> 2022 HSK 10단위 개정 내역 분석 66

<표 목 차>

<표 1> 2022 HSK 개정에 따른 개정대상 총괄표	2
<표 2> 수 대상 양허표	4
<표 3> 수행대상 양허표 HSK 수	5
<표 4> 별도 검증팀의 의견 및 반영 요약	15
<표 5> 2021 양허세율표와 2022 양허세율표(안) 비교	16
<표 6> HSK 내에 HSK 품명 표기 찬반론	18
<표 7> WTO 별표 1 가의 주1 및 주2 개정 분석	25
<표 8> WTO 별표 1 가의 주1 및 주2 2022 개정(안)	29
<표 9> 2015년 HSK로 표기된 품명의 변환 분석	42
<표 10> 8542.31-4000 등(5개)의 변환 분석	48
<표 11> GSTP, TNDC의 10단위 변환 결과	59

<표 12> GSTP, TNDC의 규정 방식 찬반론	59
<표 13> 연계표 확정 후 수행할 부분	61
<표 14> 의견조치 필요 주제	61
<표 15> HS 개정 경과	64
<표 16> HS 및 HSK 개정 연혁	65
<표 17> 2022 HSK 10단위 개정 내역 요약	66
<표 18> 2022 HSK 10단위 개정 내역(류별)	66

<그림 목 차>

<그림 1> 수행절차 및 단계별 활동 내역	6
<그림 2> 각 양허세율표별 2022 신설 예시	8
<그림 3> 1:多 - 분할(SPLIT) 예시	9
<그림 4> 多:1 - 병합(MERGE) 예시	9
<그림 5> 多:多 - (SPLIT+MERGE) 예시(2014년 개정)	10
<그림 6> 개정 형태 : SPLIT	11
<그림 7> 개정 형태 : MERGE	11
<그림 8> 개정 형태 : MERGE 변형	11
<그림 9> 대시 품목 예시(WTO 별표 1 가)	12
<그림 10> 연계정보파일(예시)	13
<그림 11> WTO 별표 1 가의 주1 및 주2	24

I. 연구 개요

- 용역명 : 2022년 HSK 개정에 따른 양허관세율표 개편안 연구
- 발주처 :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 수행기간 : 2021.07.19.~2021.09.19.(2개월)
- 수행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 양허관세율표의 근간이 되는 관세법 별표 및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가 2022년부터 대폭 개정·시행될 예정
- 수출입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역거래에 필수적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양허관세율표도 시의적절하게 개편 필요
 -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의 세번, 세율과 직접 관련되므로 협정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동일 기준으로 동시 변경 필요
- 2022 HSK 개정으로 국내 총 35개 양허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신속하고 오류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문 기관의 연구 및 분석 필요

2. 연구 목적

- '22 HSK 개편에 따라 우리나라의 양허관세율표*를 정확하고 오류 없이 개정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의 사전 연계 분석을 통한 개편안 연구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양허관세율표 변환 작업 시 수반되는 쟁점 사항 발굴 및 대안 제시

<표 1> 2022 HSK 개정에 따른 개정대상 총괄표

번호	기 호	양허관세 구분	HSK 수	본 용역 수행 대상
1	1-1	WTO 양허관세 별표 1 가	10,831	○
2	1-2	WTO 양허관세 별표 1 나	274	○
3	2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12 (HS 6 단위)	○
4	3-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별표 3 가	2,901	○
5	3-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별표 3 나	3	
6	3-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별표 3 다	972	○
7	3-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별표 3 라	965	○
8	4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26 (HS 5,6 단위)	○
9	5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186	○
10	6	최빈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	11,018	○
11	7	한칠레 FTA 양허관세	12,242	
12	8	한싱가포르 FTA 양허관세	12,242	
13	9	한 EFTA FTA 양허관세	12,242	
14	10-1	한아세안 FTA 양허관세	12,242	
15	10-2-1	한아세안 양허관세 적용 제외 물품-인도네시아	98	
16	10-2-2	한아세안 양허관세 적용 제외 물품-필리핀	136	
17	10-2-3	한아세안 양허관세 적용 제외 물품-태국	124	
18	11	한인도 CEPA 양허관세	12,242	
19	12	한 EU FTA 양허관세	12,242	
20	13-1	한페루 FTA 양허관세	12,242	
21	13-2	한페루 양허관세 적용제외 중고품	9	
22	14	한미국 FTA 양허관세	12,242	
23	15	한터키 FTA 양허관세	12,242	
24	16	한콜롬비아 FTA 양허관세	12,242	
25	17	한호주 FTA 양허관세	12,242	
26	18	한캐나다 FTA 양허관세	12,242	
27	19	한뉴질랜드 FTA 양허관세	12,242	
28	20	한베트남 FTA 양허관세	12,242	
29	21	한중국 FTA 양허관세	12,242	
30	22-1	한중미 FTA 양허관세-코스타리카	12,242	
31	22-2	한중미 FTA 양허관세-엘살바도르	12,242	
32	22-3	한중미 FTA 양허관세-온두라스	12,242	
33	22-4	한중미 FTA 양허관세-니카라과	12,242	
34	22-5	한중미 FTA 양허관세-파나마	12,242	
35	23	한영국 FTA 양허관세	12,242	
합 계			284,637 ¹⁾	9 개

1) 다만, TNDC와 GSTP는 5~6단위 수임.

3.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 법령

- (기본대상) HSK 2022 개정에 따라 WTO 협정 등의 국내 이
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3개)의 관세율표 개정내용
반영²⁾

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1의 가, 나, 별표3)

②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③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 (추가 대상) 수행 대상에 추가

①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2)

②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4)

2) (다자관세팀) WTO 등의 양허관세, 특정국가와의 국제협력관세 양허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관세협력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APTA 양허표(3의가, 3의다, 3의라)

(2) 연구 대상 양허표 세부 내용

<표 2> 수행 대상 양허표

규 정	구 분		번호	시행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 31338 호, 2020. 12. 29., 일부개정]	WTO 양허관세	별표 1 가	1	2021.01.01.
		별표 1 나	2	2021.01.01.
	APTA 양허관세 ³⁾	별표 3 가	3	2021.01.01.
		별표 3 다	4	2021.01.01.
		별표 3 라	5	2021.01.01.
	TNDC	별표 2	6	2021.01.01.
	GSTP	별표 4	7	2021.01.01.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31380 호, 2021. 1. 5., 타법개정]	국제협력관세		8	2021.01.0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제 31662 호, 2021. 5. 4., 일부개정]	최빈특혜관세		9	2021.05.04.

<표 3> 수행대상 양허표 HSK 수

구 분		번호	HS 단위	HSK 수	"-(대시)" 품목 수	비고
WTO 양허관세	별표 1 가	1	10	10,831	117	
	별표 1 나	2	10	274	0	ITA
APTA 양허관세	별표 3 가	3	10	2,901	453	
	별표 3 다	4	10	972	16	
	별표 3 라	5	10	965	16	
TNDC	별표 2	6	6	12	8	
GSTP	별표 4	7	5,6	26	8	
국제협력관세		8	10	186	6	
최빈특혜관세		9	10	11,018	10	
합 계				27,185	634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3 나(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는 HSK 수가 많지 않으므로(3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

II. 연구 수행 방법론

1. 단계별 수행 흐름

- 추진 단계별 세부과제와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그림 1> 수행절차 및 단계별 활동 내역

연구 단계	과제명	활동 내역
[1단계]	연구 계획 수립	1. 2022 HSK 및 연계표의 양허표 개정 사항 분석 2. 중요 쟁점 도출 및 해결 방안 구상
□ 착수 보고		- 착수 보고서
[2단계]	WTO 별표 1 가, 나 양허표 작성	1. 별표 1 가, 나 양허표(안) 2. 중요 쟁점 및 해결 방안 분석표
[3단계]	APTA 양허표 별표 3 가, 다, 라 작성	1. 별표 3 가, 다, 라 양허표(안) 2. 중요 쟁점 및 해결 방안 분석표
□ 중간 보고		- 중간 보고서
[4단계]	국제협력관세 양허표 작성	1. 국제협력관세 양허표(안) 2. 중요 쟁점 및 해결 방안 분석표
[5단계]	최빈개도국 양허관세 양허표 작성	1. 최빈개도국 양허표(안) 2. 중요 쟁점 및 해결 방안 분석표
[6단계]	연구결과 종합, 최종보고서 작성	1. 연구결과 종합 2.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		- 최종 보고서

2. 기본 수행방법

(1) 과제 내용 및 기본 자료

- 과제의 기본 내용은 2021년 양허표를 2022년 양허표로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작업
- 기본 자료
 - ① 9개의 2021년 양허세율표⁴⁾
 - ② 2022 HSK(안) : 기획재정부 2021.09.02 잠정본
 - ③ 2021-2022 / 2022-2021 연계표(안) : 기재부 2021.09.02 잠정본

(2) 작성 관점 및 적용 방법

- 대원칙
 - 국제협약에 따른 양허세율표의 HSK 품명과 양허세율은 당초 양허된 것과 동일한 품목 포함범위로 동일한 세율로 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대원칙임.
- 신설 라인의 관세율, 품목명, 삭제 라인의 삭제 정확성
 - 엑셀 함수 기능 적용
- 대시 품목 설정의 정확성 → 2021-2022 연계표 신설/삭제 품목의 양허대상/관세율을 적용한 기초자료 활용

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시 품목의 관세율 입력 정확성 → 개별 확인
- 대시 품목의 품목명 정확성 → 개별 작업 및 확인
- 신설 HSK 10단위 이외에 신설 HS 4단위~9단위의 추가 입력 정확성 → 엑셀 함수 기능 적용 및 확인
- 2022 신설 HSK 품명 내에 다시 HSK로 표시된 경우
→ HSK 품명 내에 다시 표시된 HSK를 HSK 연계표를 적용하여 동일한 품목 포함범위인 2022년 HSK로 변화하여 적용

<그림 2> 각 양허세율표별 2022 신설 예시

신설 예상 HSK	국문 품명	영문 품명	WTO 1 가	WTO 1 나	APTA 가	APTA 다	APTA 라	국제협약	최민
0101.30-0000	달나귀	Asses	○						○
0104.20-0000	기타	Other	○						○
0106.41-0000	벌	Bees	○						○
0205.00-0000	말·달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각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Meat of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						○
0207.1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	○					○
0207.1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Not cut in pieces, frozen	○	○					○
0207.13-1000	절단육	Cuts	○	○					○
0210.99-0000	기타	Other	○	○					○
0301.11-0000	민물고기	Freshwater	○		○				○
0301.91-0000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웅코링무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웅코링무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웅코링무스 아구아보이타(<i>Oncorhynchus aglaboita</i>)·웅코링무스 길레(<i>Oncorhynchus giles</i>)·웅코링무스 아페체(<i>Oncorhynchus aspeche</i>)]	Trout (<i>Salmo trutta</i> , <i>Oncorhynchus mykiss</i> , <i>Oncorhynchus clarki</i> , <i>Oncorhynchus aglaboita</i> , <i>Oncorhynchus giles</i> , <i>Oncorhynchus aspeche</i>)	○		○				○

3. HSK 개정 유형

(1) 1:1 - ORDINARY

- 2022 HSK 개정과 상관없이 현행 유지되는 경우를 말함.
- 일부 품목은 “품명”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음.

(2) 1:多 - 분할(SPLIT)

- 2022 HSK 1개가 2022 여러 개의 HSK로 분리되는 경우를 말함.
- 2021 HSK가 '22년 개정으로 신설되는 부분을 포함함.

<그림 3> 1:多 - 분할(SPLIT) 예시

2019.10.01				2022.01.01		
ex	HSK	기본관세율 (%, 원)	비고	ex	HSK	비고
ex	0306.19-1000	20	변경		0306.19-1000	변경
ex	0306.19-1000	20	변경		0309.90-1110	신설
ex	0306.19-1000	20	변경	ex	0309.90-1930	신설

(3) 多:1 - 병합(MERGE)

- 현행 HSK 여러 개가 2022 HSK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를 말함.
- 현행 HSK가 '22년 개정으로 삭제되는 부분을 포함함.

<그림 4> 多:1 - 병합(MERGE) 예시

2019.10.01				2022.01.01		
ex	HSK	기본관세율 (%, 원)	비고	ex	HSK	비고
	2939.49-0000	8	변경	ex	2939.49-0000	변경
ex	2939.71-0000	8	삭제	ex	2939.49-0000	변경
ex	2939.79-9000	8	변경	ex	2939.49-0000	변경

(4) 多:多 - (SPLIT + MERGE)

- 현행 HSK 여러 개가 2022 신설되는 여러 개의 HSK로 개정되는 경우임. 이러한 경우의 수는 많지는 않음.
- 이 부분에서 새로운 대시("-") 품목 발생 가능

<그림 5> 多:多 - (SPLIT+MERGE) 예시(2014년 개정)

2013			2014		
ex	8508110000	삭제		8508111000	신설
ex	8508110000	삭제		8508119000	신설
ex	8508191000	삭제	ex	8508192000	신설
ex	8508191000	삭제	ex	8508199000	변경
ex	8508199000	변경	ex	8508192000	신설
ex	8508199000	변경	ex	8508199000	변경

* 2014년 HSK 개정시 기존의 가정용과 기타로 구분되던 진공청소기가 로보트형과 기타로 개정[HSK간 상호 중첩(overlapping)이 발생함. 예를 들어, 2013기준 8518.19-1000(가정용)에 2014 기준 로보트형과 기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반대로 2014 기준 8508.19-2000 로보트형에는 2013 기준 가정용과 기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4. 항목별 개정 수행 방법론

(1) 품명

- 2022 양허표의 품명은 2022 HSK의 품명을 그대로 가져오되, 변경에 따라 포함범위가 달라지는 HSK와 대시 품목, 신설되는 대시 품목의 세부 품목은 개별 검토 및 작성 필요
- 류~9단위 품목명은 관세율이 기재되는 라인만 아니지만 관세율이 기재되는 10단위 HSK의 해석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2022 HSK에 기재된 품명을 개별 대조하여 누락없이 입력·수록⁵⁾

(2) 관세율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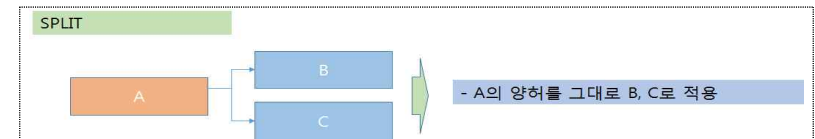
- HSK 및 대시 품목이 품명과 포함범위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2021) 양허세율 스케줄을 그대로 가져옴
- 변경/신설 품목의 관세율은 2021-2022 연계표를 참조하여 2021년 세율을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 예정

5) 초안 작성 후에 각 양허표의 신설 류~9단위 부분은 2022 HSK에서 신설된 부분을 별도로 모아서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누락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 예정

(3) 분할(SPLIT) 품목

- 2021-2022 연계표를 참조하여 신설 HSK 설정
- 관세율은 현행 HSK의 관세율을 분할되어 신설되는 각 HSK에 그대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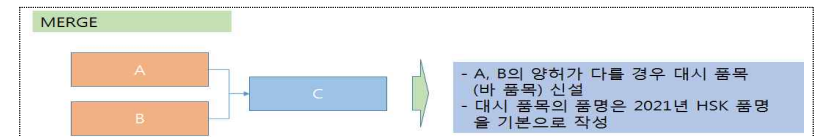
<그림 6> 개정 형태 : SPL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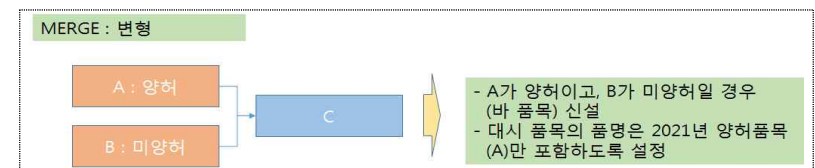
(4) 병합(MERGE) 품목

- MERGE 품목은 2021-2022 연계표를 참조하여 2022년 신설 HSK로 이동하여 규정 예정
-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 새로 신설된 HSK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 신설된 HSK와 합쳐질 HSK의 관세율이 다른 경우 대시 품목 신설 가능성 있음.

<그림 7> 개정 형태 : MERGE



<그림 8> 개정 형태 : MERGE 변형



(5) [SPLIT+MERGE] 품목

- 신설되는 HSK의 해당 부분에 대한 현행 관세율을 가져가되, 포함범위에 대해서 대시(-) 품목으로 처리 필요한 부분을 규명
- 이번 연구에서는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5. 연계정보파일 활용

- 2021-2022 연계표에 관세율 정보를 추가한 “연계정보파일”을 작성하여 적용
- 2022 HSK로 정렬하여⁶⁾, 2022 HSK 1개에 2021년 HSK가 2개 이상 연계되고 해당 양허세율의 종류가 다를 경우 대시(“-”)를 설정하여 표기
- 대시(-) 품목은 해당 HSK 전체 중 일부에만 해당 관세율을 설정하고자 할 때 표시함.
- 현행 대시 품목이 HSK의 SPLIT, MERGE와 겹쳐지게 되면 개정 내용이 복잡해지게 됨.

<그림 9> 대시 품목 예시(WTO 별표 1 가)

품목번호	품명	세율(%)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0302 99 0000	기타				
	- 0302.11.2000, 0302.19-0000, 0302.52.0000, 0302.53.0000호 어류의 것으로 한함	20	20	20	

<그림 10> 연계정보파일(예시)

연계정보파일(예시)

대시(“-”) 품목 설정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일부 예시)

WTO 별표 1 가							
ex	2021 HSK	비고	1가	1가	ex	2022 HSK(9.2)	비고
199	0601.10-9000	[변경]	<양>	27.0	ex	0601.10-9000	[변경]
200	0601.20-3000	<삭제>	<양>	27.0	ex	0601.20-9090	[변경]
201	0601.20-4000	<삭제>	<양>	27.0	ex	0601.20-9090	[변경]
202	0601.20-5000	<삭제>	<양>	27.0	ex	0601.20-9090	[변경]
203	0601.20-6000	<삭제>	<양>	18.0	ex	0601.20-9090	[변경]
204	0601.20-9090	[변경]	<양>	27.0	ex	0601.20-9090	[변경]
205	0602.10-1000	<삭제>	<양>	13.1	ex	0602.10-0000	<신설>
206	0602.10-9000	<삭제>	<양>	13.1	ex	0602.10-0000	<신설>
207	0602.20-5000	<삭제>	<양>	13.1	ex	0602.20-9000	[변경]
208	0602.20-7010	<삭제>	<양>	13.1	ex	0602.20-9000	[변경]
209	0602.20-7020	<삭제>	<양>	13.1	ex	0602.20-9000	[변경]
210	0602.20-7030	<삭제>	<양>	13.1	ex	0602.20-9000	[변경]
211	0602.20-9000	[변경]	<양>	13.1	ex	0602.20-9000	[변경]
212	0602.90-2011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13	ex 0602.90-2020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14	ex 0602.90-2030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15	ex 0602.90-2040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16	ex 0602.90-2050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17	0602.90-2061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18	0602.90-2071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19	0602.90-2081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20	0602.90-2091	<삭제>	<양>	13.1	ex	0602.90-2010	<신설>
221	ex 0602.90-2099	<삭제>	<양>	13.1	ex	0602.90-2021	<신설>
222	ex 0602.90-2019	<삭제>	<양>	13.1	ex	0602.90-2029	<신설>
223	ex 0602.90-2020	<삭제>	<양>	13.1	ex	0602.90-2029	<신설>
224	ex 0602.90-2030	<삭제>	<양>	13.1	ex	0602.90-2029	<신설>

APTA 가							
ex	2021 HSK	비고	APTA 가	세율	ex	2022 HSK(9.2)	비고
1864	5806.10-9000	[변경]	[미]	[미]	ex	5806.10-9000	[변경]
1865	5806.39-1000	<삭제>	[미]	[미]	ex	5806.39-0000	<신설>
1866	5806.39-2000	<삭제>	[미]	[미]	ex	5806.39-0000	<신설>
1867	5806.39-9000	<삭제>	[미]	[미]	ex	5806.39-0000	<신설>
1868	5808.90-1000	<삭제>	<양>	5.6	ex	5808.90-0000	<신설>
1869	5808.90-9000	<삭제>	[미]	[미]	ex	5808.90-0000	<신설>
1870	5811.00-1000	<삭제>	[미]	[미]	ex	5811.00-9000	[변경]
1871	5811.00-2000	<삭제>	<양>	5.6	ex	5811.00-9000	[변경]
1872	5811.00-3000	<삭제>	[미]	[미]	ex	5811.00-9000	[변경]
1873	5811.00-9000	[변경]	<양>	5.6	ex	5811.00-9000	[변경]
1874	5911.10-1000	<삭제>	[미]	[미]	ex	5911.10-0000	<신설>
1875	5911.10-9000	<삭제>	[미]	[미]	ex	5911.10-0000	<신설>
1876	6105.90-1000	<삭제>	[미]	[미]	ex	6105.90-0000	<신설>
1877	6105.90-2000	<삭제>	[미]	[미]	ex	6105.90-0000	<신설>
1878	6105.90-9000	<삭제>	[미]	[미]	ex	6105.90-0000	<신설>
1879	6106.90-1000	<삭제>	[미]	[미]	ex	6106.90-0000	<신설>
1880	6106.90-2000	<삭제>	<양>	9.1	ex	6106.90-0000	<신설>
1881	6106.90-9000	<삭제>	[미]	[미]	ex	6106.90-0000	<신설>
1882	6107.99-1000	<삭제>	<양>	9.1	ex	6107.99-0000	<신설>
1883	6107.99-9000	<삭제>	[미]	[미]	ex	6107.99-0000	<신설>
1884	6108.19-1000	<삭제>	[미]	[미]	ex	6108.19-0000	<신설>
1885	6108.19-9000	<삭제>	[미]	[미]	ex	6108.19-0000	<신설>
1886	6108.99-1000	<삭제>	[미]	[미]	ex	6108.99-0000	<신설>
1887	6108.99-9000	<삭제>	[미]	[미]	ex	6108.99-0000	<신설>
1888	6112.20-1000	<삭제>	[미]	[미]	ex	6112.20-0000	<신설>
1889	6112.20-9000	<삭제>	[미]	[미]	ex	6112.20-0000	<신설>

* 2022 신설 라인에 연계되는 2021 라인들이 양허세율이 다르다면 → “대시 품목(-)” 설정

* 2022 신설 라인에 연계되는 2021 라인들이 양허세율이 다르다면 → “대시 품목(-)” 설정

6) <그림 10>에서 “2022 HSK(9.2.)” 셀 기준으로 정렬

6. 정확성 확보 방안

(1) 별도 검증팀에 의한 교차 체크

- 초안 작성팀과 별도 팀을 구성하여 교차 체크
- 작성자는 스스로의 시각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 검증팀이 다른 시각에서 검증 수행
- 1차 작성 → 2차 작성자 검증 → 3차 별도팀 검증으로 교차 체크

(2) 엑셀 전산에 의한 검증

- 엑셀 함수기능을 적용하여 자동 형성할 수 있는 부분
- 초안 작성 후 엑셀 함수기능을 적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 부분 등

(3) 쟁점 사항 수시 협의

- 쟁점 사항 도출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와 수시 협의

(4) 통계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

- Stata(통계 데이터 관리 시스템)⁷⁾의 병합(Merge) 기능 등을 활용 검증
- 연구용역 완료 후 보완 과정에서 활용 예정

7) Stata는 통계학의 전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단지 통계 패키지가 아닌 통계적 능력을 갖춘 완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129개국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Stata는 초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처리하는데 있어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Stata는 호환성이 뛰어나 모든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Stata에서 사용되는 dataset는 여러 플랫폼에서 변환하지 않고 공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Stata는 새로운 명령어를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한 번의 클릭만으로 web상의 data를 공유하고 수시로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을 자동으로 Update가 가능합니다.(출처 : 한국STATA학회)

III. 수행 결과 요약

1. 초안 제출 완료

- 9개 양허세율표에 대한 초안 엑셀파일 작성·제출 완료('21.9.16)
- 작성팀과 별도 검증팀 운영
 - 별도 검증팀 총 50건 의견 제시, 이 중 45건 반영·수정(주로, 세율 누락, 품명 등)하였으며 반영이 필요 없는 5건(HSK 품명에 다시 HSK로 표현된 경우 대시 품목 설정 여부 불필요 등)은 미 반영

<표 4> 별도 검증팀의 의견 및 반영 요약

번호	구 분	별도팀 검증 의견 건수	반영	미반영	처리율(%)
1	WTO 별표 1 가	22	17	5	100
2	WTO 별표 1 나	0	0	0	100
3	별표 3(APTA) 가	24	24	0	100
4	별표 3(APTA) 다	3	3	0	100
5	별표 3(APTA) 라	0	0	0	100
6	국제협력관세	1	1	0	100
7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0	0	0	100
8	GSTP	0	0	0	100
9	TNDC	0	0	0	100
합 계		50	45	5	100

2. 수행결과 총요약표

○ 2021 양허세율표와 2022 양허세율표(안) 비교⁸⁾

- 전체적으로, HSK 10단위 수는 7.5% 감소, 대시 라인 수는 90% 증가 예상

<표 5> 2021 양허세율표와 2022 양허세율표(안) 비교

번호	구 분	2021		삭제		신설		2022(안)			
		10 단위	대시	10 단위	대시	10 단위	대시	10 단위	증감율 (%)	대시	증감율 (%)
1	WTO 양허관세 별표 1 가	10,831	117	2,127	24	1,217	195	9,921	(8.4)	288	146.2
2	WTO 양허관세 별표 1 나	274	0	5	0	7	1	276	0.7	1	-
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별표3 가	2,901	453	544	300	475	656	2,832	(2.4)	809	78.6
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별표3 다	972	16	178	0	104	5	898	(7.6)	21	31.3
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별표3 라	965	16	178	0	113	5	900	(6.7)	21	31.3
6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186	6	18	0	41	0	209	12.4	6	0.0
7	최빈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	11,018	10	2,255	0	1,304	26	10,067	(8.6)	36	260.0
8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17	9	1	1	1	1	17	0.0	9	0.0
9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30	0	0	0	0	0	30	0.0	0	-
합 계		27,194	627	5,306	325	3,262	889	25,150	(7.5)	1,191	90.0

8) 기획재정부의 2021년 9월 2일자 2021-2022 연계표(안) 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집계한 통계이므로 최종확정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물에서는 특히, 8542.31-4000 등 5개 HSK에 그러한 예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위 쟁점 유형 1의 ②의 방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게 됨.
- HSK 내에 HSK로 품명 표기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론

<표 6> HSK 내에 HSK 품명 표기 찬반론

구 분	찬성론	반대론
내 용	- 복잡한 품명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표현 가능 - "기타 세번"9)의 경우 등 실품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 HSK가 개정되는 경우 삭제 · 신설되거나 포함범위가 달라지는 등 적용이 복잡 - 관세행정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HSK 내에서 품목을 확정하지 못하고 다시 적용할 HSK를 찾아서 참조해야 함

- 본 연구에서의 입장
- HSK 내에 HSK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HSK로 표기하되, HSK로 표기하여 포함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길고 복잡하더라도 실품명으로 변환하여 표기

9) "기타(Other) 세번"은 HSK 중에서 품명이 "기타(Other)"나 또는 그 밖에 확정할 수 없는 품명으로 되어 있는 HSK를 말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잔여호(residual heading)"이라고 하기도 함. 주로 뒤 4단위가 -9000, -9090, -9099, -9900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기타세번"은 통계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많은 품목을 모두 분류하는 HSK로서 그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게 됨.

3. 기타 사항 : ex 품목의 문제

- 이번 연구에서는 연계표 상의 "ex 품목의 해석"10) 관련해서는 별도 쟁점이 없었음.
- 개정 유형 중 1:1, 1:多의 경우에는 ex 품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多:1의 경우에는 연계되는 여러 HSK의 세율이 다른 대신 품목 설정으로 해결되기 때문
- HSK 개정 연계 유형 중 앞 <그림 11>의 "多:多 - (SPLIT+MERGE)"에서 연계되는 HSK 중 세율이 다른 경우에 "ex 품목의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2021-2022 개정에서는 多:多 개정 유형은 없었기 때문
- 또한 본 연구는 2021-2022 1년 개정 업그레이드로서, 중간년도의 중복 개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ex 관련 쟁점은 없음.
- 그러나, 예를 들어, 2014-2022와 같이 중간에 2014=2015-2017, 2017-2019, 2019-2021, 2021-2022의 여러 단계의 중복되는 개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는 중간과정에서의 ex의 해석이 논란이 발생될 소지는 있음.11)

10) 양허세율표 등에서 ex는 "ex-out"의 줄임말로써, 그 HSK의 일부분만 해당한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음.
11) 즉, 개정되는 중간에 연계되는 HSK의 일부 품목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V. 주요 쟁점 : WTO 별표 1 가

1. 신설 3002.90-9000

□ 연계표

2021				2022			
	3002.90-7000	<삭제>	<양>	6.5	ex	3002.90-9000	[변경]
	3002.90-8000	<삭제>	<양>	0.0	ex	3002.90-9000	[변경]
ex	3002.90-9000	[변경]	<양>	0.0	ex	3002.90-9000	[변경]

□ 쟁점 설명

- 2022년 3002.90-9000호에 대하여 2021년 3개의 HSK가 연계되고, 양허세율은 6.5%, 0.0% 두 종류이므로, 2022년 3002.90-9000에 대해 2개의 대시(-) 품목 설정 필요
- 이 경우, 2021년 3002.90-8000의 품명이 “소호 제3002.12.1000호, 제3002.12.9021호, 제3002.12.9022호, 3002.12.9030호의 것” 이고, 3002.12-1000, 3002.12-9021, 3002.12-9022, 3002.12.9030 이 2022년에는 삭제되므로, 실품명으로 변환 필요

□ 작성 결과

작성 결과							
3002.90.9000	3002.90.9000	기타	기타				
		- 제2833.23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6.5	6.5	6.5	
		- 기타(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해용 모양이나 포장에 한 것, 헤모글로빈, 글로불린(globulin), 트롬빈(thrombin),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0.0	0.0	0.0	

2. 신설 3006.93-0000

□ 연계표

2021				2022			
ex	3004.90-9900	[변경]	[미]	[미]	ex	3004.90-9900	[변경]
ex	1704.90-9000	[변경]	<양>	19.7	ex	3006.93-0000	<신설>
ex	2106.90-9099	[변경]	<양>	54.0	ex	3006.93-0000	<신설>
ex	2202.99-9000	[변경]	<양>	26.2	ex	3006.93-0000	<신설>
ex	3004.90-9900	[변경]	[미]	[미]	ex	3006.93-0000	<신설>
ex	3824.99-9090	[변경]	<양>	6.5	ex	3006.93-0000	<신설>

□ 쟁점 설명

- 2022년 3306.93-0000에 대하여 2021년 총 5개의 HSK가 연계되고, 양허세율 종류는 19.7, 54.0, 26.2, 6.5로서 4종류이며, 3004.90-9900은 미양허임.
- 따라서, 2022 3006.93-0000에는 4개 라인의 대시 품목 설정 필요

□ 작성 결과

- 연계된 HSK 중 양허된 4개에 대해서만 대시 품목 설정

작성 결과							
3006.93.0000	3006.93.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병검(또는 이중 병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 제1704.90.9000호의 것	<신설>	19.7	19.7	19.7	
		- 제2106.90.9099호의 것	<신설>	54.0	54.0	54.0	
		- 제2202.99.9000호의 것	<신설>	26.2	26.2	26.2	
		- 제3824.99.9090호의 것	<신설>	6.5	6.5	6.5	

3. 신설 8485¹²⁾

□ 연계표

2021				2022			
	8463.90-1000	<삭제>	<양>	13.0		8485.10-0000	<신설>
ex	8477.59-1000	<삭제>	<양>	13.0		8485.20-1000	<신설>
ex	8477.59-1000	<삭제>	<양>	13.0		8485.20-9000	<신설>
ex	8475.29-9000	[변경]	<양>	13.0	ex	8485.30-0000	<신설>
ex	8479.89-9070	<삭제>	[미]	[미]	ex	8485.30-0000	<신설>
ex	8441.80-9000	[변경]	<양>	13.0	ex	8485.80-0000	<신설>
ex	8465.99-9000	[변경]	<양>	13.0	ex	8485.80-0000	<신설>
ex	8479.89-9070	<삭제>	[미]	[미]	ex	8485.80-0000	<신설>
ex	8441.90-0000	[변경]	<양>	13	ex	8485.90-0000	<신설>
ex	8466.92-0000	[변경]	<양>	13	ex	8485.90-0000	<신설>
ex	8466.94-0000	[변경]	<양>	13.0	ex	8485.90-0000	<신설>
ex	8475.90-9000	[변경]	<양>	13.0	ex	8485.90-0000	<신설>
ex	8477.90-0000	[변경]	<양>	13.0	ex	8485.90-0000	<신설>
ex	8479.90-9090	[변경]	<양>	13.0	ex	8485.90-0000	<신설>

□ 쟁점 이유

- 2022년 8485.30-0000에 대해서 2021년 2개 HSK(8479.89-9070은 미양허이므로 제외), 2022년 8485.80-0000에 대해서 2021년 3개 HSK(8479.89-9070은 미양허이므로 제외), 2022년 8485.90-0000(부분품)에 대해서 2021년 6개 HSK가 연계되므로, 각 대시 품목 설정 필요

□ 특이 사항

○ 특이사항 1

- 2022 8485.80-0000에 연계되는 2021 8479.89-9070가 미양허이므로, 논리상 해당 부분품인 2021 8479.90-9090도 미양허여야 하는데도, 현행 양허표에서 8479.90-9090이 13%로 양허되어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미양허, 부분품은 양허인 결과가 되고 있음.¹³⁾

○ 특이사항 2

- 2022 8485.90-0000에 연계되는 2021 8479.90-9090이 양허대상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함.

□ 작성 결과

작성 결과						
품목번호	Dumy	품 명 2022(안)(Based on 2021.08.011 ver)	품 명 2020.12.29	세율(%)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8485		적층제조기계	<신설>			
8485 10	0000	금속용	<신설>	13.0	13.0	13.0
8485 20		플라스틱, 고무용	<신설>			
8485 20 1000		데스크탑 형태의 재료압출방식	<신설>	13.0	13.0	13.0
8485 20 9000		기타	<신설>	13.0	13.0	13.0
8485 30	0000	플라스틱, 시멘트, 세라믹, 유리용	<신설>			
		- 유리용	<신설>	13.0	13.0	13.0
8485 30 0000		기타	<신설>			
		- "재질을 플라스틱, 종이, 판지용, 고무, 금속, 세라믹, 유리용, 기타를 포함"하는 품목에 대한 양허를 2021년까지 재8485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기계(고무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던 것	<신설>	13.0	13.0	13.0
8485 90	0000	부분품	<신설>	13.0	13.0	13.0
		- 금속용, 플라스틱, 고무용, 플라스틱, 시멘트, 세라믹, 유리용, 재질을 포함, 종이, 판지용, 고무, 금속, 세라믹, 유리용, 기타를 포함,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용, 2021년까지 재8485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기계(고무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던 것	<신설>	13.0	13.0	13.0

12) "적층제조기계(Machines for additive manufacturing)"로서 흔히 3D 프린터라고도 함.

13) 별표3(APTA)가에서도 마찬가지

4. 주1, 주2

□ 주1, 주2 현황

- WTO 양허세율 별표 1 가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주1과 주2가 첨부되어 있음.

<그림 11> WTO 별표 1 가의 주1 및 주2

주1. 품목번호 8529.90.9630, 8529.90.9643, 8529.90.9649, 8542.31.4020, 8542.31.4090, 8542.32.4020, 8542.32.4090, 8542.33.4020, 8542.33.4090, 8542.39.4020, 8542.39.4090, 8542.90.4020 및 8542.90.4090에 해당하는 물품의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이행 연도별 세율은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조약 제2326호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각 물품에 해당되는 기준세율 및 연도별 양허단계표를 따른다.

주2. 품목번호 8543.70.9010 및 9025.80.3090에 해당하는 물품의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이행 연도별 세율은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조약 제2326호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각 물품에 해당되는 기준세율 및 연도별 양허단계표를 따른다.

- 주요 내용은 일부 품목의 2017년~2019년 이행 연도별 세율을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따르도록 하는 것임.
- 현 시점에서도 2017년~2019년 적용된 관세율이 실제 현장 (예: 관세 관련 소송 등)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주1 및 주2는 존치할 필요가 있음.

□ 쟁점 이유

- 본 조항에 기재된 품목번호(HSK) 중 2022년에 개정되는 것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2022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함.

<표 7> WTO 별표 1 가의 주1 및 주2 개정 분석

	구분	2021 ¹⁵⁾	2022 개정	2022 개정 설명	2022 반영 품명(안)
1	주1	8529.90.9630	ex8529.90-6029	8529.90-6029로 통합	텔레비전 수신기의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2	주1	8529.90.9643	8524.12-3000 8524.92-3000 ex8529.90-2000 8529.90-6023	여러 세번으로 분리	제8524.12-3000호 · 제8524.92-3000호, 제8529.90-2000호 · 제8529.90-6023호의 것(텔레비전 수신기의 그 밖의 천연색용으로서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한정한다)
3	주1	8529.90.9649	ex8524.19-3000	여러 세번으로 분리	제8524.19-3000호 · 제8524.99-3000호, 제

번호	구분	2021 ¹⁵⁾	2022 개정	2022 개정 설명	2022 반영 품명(안)
			ex8524.99-3000 ex8529.90-2000 ex8529.90-6029	리	8529.90-2000호 · 제8529.90-6029호의 것(텔레비전 수신기의 그 밖의 천연색용으로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액정디스플레이 방식용,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은 제외한다)
4	주1	8542.31.4020	ex8542.31-4000	8542.31-4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 · 제9306호 · 제8517호 ·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 · 제9031호 ·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5	주1	8542.31.4090	ex8542.31-4000	8542.31-4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 · 제9306호 · 제8517호 ·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 · 제9031호 ·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6	주1	8542.32.4020	ex8542.32-4000	8542.32-4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 · 제9306호 · 제8517호 ·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 · 제9031호 ·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
7	주1	8542.32.4090	ex8542.32-4000	8542.32-4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 · 제9306호 · 제8517호 ·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 · 제9031호 ·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

	구분	2021 ¹⁵⁾	2022 개정	2022 개정 설명	2022 반영 품명(안)
					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8	주1	8542.33.4020	ex8542.33-4000	8542.33-4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 · 제9306호 · 제8517호 ·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 · 제9031호 ·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9	주1	8542.33.4090	ex8542.33-4000	8542.33-4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 · 제9306호 · 제8517호 ·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 · 제9031호 ·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10	주1	8542.39.4020	ex8542.39-4000	8542.39-4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 · 제9306호 · 제8517호 ·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 · 제9031호 ·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
11	주1	8542.39.4090	ex8542.39-4000	8542.39-4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 · 제9306호 · 제8517호 ·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 · 제9031호 ·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

번호	구분	2021 ¹⁵⁾	2022 개정	2022 개정 설명	2022 반영 품명(안)
					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12	주1	8542.90.4020	ex8542.90-0000	8542.90-0000으로 통합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제9306호·제8517호·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호·제8531.20호·제9031호·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29호·제8430호·제8443.99호·8470호·제8471호·제8472호·제9026호·제9030호·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13	주1	8542.90.4090	ex8542.90-0000	8542.90-0000으로 통합	
14	주2	8543.70.9010	-	개정 없음	8543.70-9010
15	주2	9025.80.3090	ex8541.51-1000 ex9025.80-3000	2개 세번으로 분리	습도계(건습구 습도계를 제외한다)

15) 정확하게는 2020.09.22. 신설

<표 8> WTO 별표 1 가의 주1 및 주2 2022 개정(안)

	2021	2022(안)
주1	주1. 품목번호 8529.90.9630, 8529.90.9643, 8529.90.9649, 8542.31.4020, 8542.31.4090, 8542.32.4020, 8542.32.4090, 8542.33.4020, 8542.33.4090, 8542.39.4020, 8542.39.4090, 8542.90.4020 및 8542.90.4090에 해당하는 물품의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이행 연도별 세율은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조약 제2326호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각 물품에 해당되는 기준세율 및 연도별 양허단계표를 따른다.	<주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이행 연도별 세율은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조약 제2326호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각 물품에 해당되는 기준세율 및 연도별 양허단계표를 따른다. - 텔레비전 수신기의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 제8524.12-3000호·제8524.92-3000호·제8529.90-2000호·제8529.90-6023호의 것(텔레비전 수신기의 그 밖의 천연색 용으로서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한정한다), 제8524.19-3000호·제8524.99-3000호·제8529.90-2000호·제8529.90-6029호의 것(텔레비전 수신기의 그 밖의 천연색 용으로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액정디스플레이 방식용,

구분	2021	2022(안)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은 제외한다) -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제9301호·제9306호·제8517호·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호·제8531.20호·제9031호·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29호·제8430호·제8443.99호·8470호·제8471호·제8472호·제9026호·제9030호·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며,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주2	주2. 품목번호 8543.70.9010 및 9025.80.3090에 해당하는 물품의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이행 연도별 세율은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조약 제2326호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각 물품에 해당되는 기준세율 및 연도별 양허단계표를 따른다.	<주2>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이행 연도별 세율은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조약 제2326호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각 물품에 해당되는 기준세율 및 연도별 양허단계표를 따른다. - 제8543.70-9010호의 것 - 습도계(건습구 습도계를 제외한다)

	2021 HSK			2022 HSK
	8537.10-1000	디	ex	8537.10-4000
ex	8537.10-9000	디	ex	8537.10-4000
ex	8537.10-9000	디	ex	8537.10-5090
	8537.10-2090	디	ex	8537.10-5090

6. 연계표 확정 후 수행할 부분

□ 2022 HSK 개정에 따른 2021-2022 연계표가 확정되지 않은
다음 부분은 향후 연계표 확정 후 수행 필요

- 신설 8524(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신설 8541.5(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 신설 8549(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VI. 주요 쟁점 : 별표 3(APTA) 가

1. 신설 2811.19-9000

□ 연계표

2021				2022			
2811.19-1000	<삭제>	<양>	3.9	ex	2811.19-9000	[변경]	
2811.19-4000	<삭제>	[미]	[미]	ex	2811.19-9000	[변경]	
2811.19-5000	<삭제>	[미]	[미]	ex	2811.19-9000	[변경]	
2811.19-7000	<삭제>	[미]	[미]	ex	2811.19-9000	[변경]	
2811.19-8000	<삭제>	[미]	[미]	ex	2811.19-9000	[변경]	
2811.19-9000	[변경]	<양>	3.9	ex	2811.19-9000	[변경]	

□ 쟁점 이유

- 2022 2811.19-9000에 2021년 6개의 HSK가 연계되며, 이
중에서 2811.19-4000(과염소산), 2811.19-5000(염소산),
2811.19-7000(아인산), 2811.19-8000(비산)은 미양허이므로
제외하여야 함.

□ 작성 결과

(1안) 2022 2811.19-9000의 품명에 반영

(1안)			
품목번호	품 명(2022)	품 명(2021)	세율(%)
2811199000	기타(과염소산, 염소산, 아인산, 비산을 제외한다)	기타	3.85

(2안) 대시 품목으로 처리

(2안)			
품목번호	품 명(2022)	품 명(2021)	세율(%)
2811199000	기타	기타	
	- 기타(과염소산, 염소산, 아인산, 비산을 제외한다)	<신설>	3.85

2. 신설 2852.10-0000

□ 연계표

2021				2022			
2852.10-1000	<삭제>	<양>	2.8	ex	2852.10-0000	<신설>	
2852.10-2000	<삭제>	<양>	3.3	ex	2852.10-0000	<신설>	
2852.10-3000	<삭제>	[미]	[미]	ex	2852.10-0000	<신설>	
2852.10-4000	<삭제>	[미]	[미]	ex	2852.10-0000	<신설>	
2852.10-5000	<삭제>	[미]	[미]	ex	2852.10-0000	<신설>	
2852.10-6000	<삭제>	<양>	5.6	ex	2852.10-0000	<신설>	

□ 쟁점 이유

- 2022 2852.10-0000에 2021 6개 HSK가 연계되며, 이 중 미양허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라인을 대시 라인으로 처리하여야 함.
- 이 3개 라인의 품명이 2021 HSK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2022년 HSK로 변환하고, 변환되지 않는 것은 실품명으로 변환

2852.10-1000 등의 2021년 품명	
2021 HSK	2021 품명
2852101000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또는 제2853호의 것
2852102000	제2931호의 것, 소호 제2918.11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00.1091호, 제3822.00.2091호의 것
2852106000	제3822.00.1099호, 제3822.00.2099호의 것

- 특히, 삭제되는 3822.00.1099/3822.00.2099[“기타(Other)” 품목]을 실품명으로 변환

□ 작성 결과

- 작성 결과는 아래와 같이 길고 복잡한 품명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만, 실제 수출입 신고시나 관세 불복 절차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법일 것으로 보임.

작성 결과			
품목번호	품 명(2022)	품 명(2021)	세율(%)
2852100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신설>	
	-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000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제2853호의 것	<신설>	2.75
	- 제2931호의 것, 소호 제2918.11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호의 것, 단, 실용 시약과 실험실용 시약(조제된 것(필터를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으로 한정한다	<신설>	3.25
	- 제3822호의 것, 단, 실용 시약과 실험실용 시약(조제된 것(필터를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은 제외한다)과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인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품 목임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제외한다(로 한정한다)	<신설>	5.60

3. 순삭제 8419.39-1000

□ 연계표

2021					2022	
	8419.39-1000	<삭제>	<양>	2.0	순삭제	[변경]
ex	8419.39-9000	<삭제>	<양>	6.0	ex 8419.33-0000	<신설>

□ 쟁점 이유

- 연계표와 같이, 2021 8419.39-1000은 2022 연계 HSK 없이 삭제(“순삭제”)임.
- 이에 따라 2022 8419.33-0000에 신설되는 대시 라인의 품명에 대해서 다음 2가지 안이 가능함.

(1안) - 기타(농산물용·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을 제외한다)

(2안) - 기타(농산물용·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 드라이어를 제외한다)

□ 순삭제 이유 확인 결과

- 기획재정부 의견조회 결과,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 드라이어”는 제8486호에 분류되고, 제8419.39호에는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순삭제”되는 것으로 확인됨.

□ 작성 결과

- 순삭제 이유가 제8419.39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이유라면, 위 (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작성 결과			
품목번호	품 명(2022)	품 명(2021)	세율(%)
841939	<삭제>	기타	
8419391000	<삭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 드라이어	2.01
8419399000	<삭제>	기타	6.00
8419330000	동결건조 장치·유닛과 분무건조기	<신설>	
	- 기타(농산물용·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을 제외한다)	<신설>	6.00
8419390000	기타(농산물용·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을 제외한다)	<신설>	6.00

□ 추가 쟁점

-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 드라이어”의 정확한 품목분류 검토 필요
-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 드라이어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486호가 맞는지 확인 필요
- 2021 제8419.39-1000호의 양허세율은 2.0%로 양허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드라이어의 정확한 HSK의 양허세율이 다를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음.¹⁶⁾

16) APTA 양허 내용을 보면, 제8486호에서는 제8486.90호(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만 0.0%로 양허하고 나머지 품목은 미양허이므로, 일견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드라이어는 미양허 품목인 것으로 보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가 필요함.

4. 신설 8479.83-0000

□ 연계표

2021				2022			
ex	8479.81-9000	[변경]	<양>	5.6	ex	8479.83-0000	<신설>
ex	8479.89-9099	[변경]	<양>	(대시 품목)	ex	8479.83-0000	<신설>

□ 2021 8479.89-9099 현황¹⁷⁾

2021 8479.89-9099			
품목번호	품 명 (2022)	품 명 (2021)	세율(%)
8479899099	기타	기타	B
	-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5.36

□ 쟁점 이유

- 2022 8479.83-0000에 대해 2021 2개의 HSK가 연계되고, 이 중 8479.89-9099는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에 대해서만 5.36%로 양허하고 있음.

□ 작성 결과

- 아래와 같이 2개의 대시 라인 설정¹⁸⁾

작성 결과			
품목번호	품 명 (2022)	품 명 (2021)	세율(%)
8479830000	냉간 등압성형기	<신설>	
	- 금속 처리용(금속 세척기, 금속 도금기, 권선기, 풀연기 나 분호재용 피복기를 절연한다)의 것	<신설>	5.60
	-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의 것	<신설>	5.36

17) “세율(%)”열의 “B”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부여한 더미문자로서, 2021년에 이미 대시 라인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

18) 냉간 등압성형기가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의 것”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안정적인 대응 측면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

5. 신설 8485.90-0000

□ 연계표

2021				2022			
ex	8441.90-0000	[변경]	[미]	[미]	ex	8485.90-0000	<신설>
ex	8466.92-0000	[변경]	[미]	[미]	ex	8485.90-0000	<신설>
ex	8466.94-0000	[변경]	<양>	6.0	ex	8485.90-0000	<신설>
ex	8475.90-9000	[변경]	<양>	5.4	ex	8485.90-0000	<신설>
ex	8477.90-0000	[변경]	[미]	[미]	ex	8485.90-0000	<신설>
ex	8479.90-9090	[변경]	<양>	2.5	ex	8485.90-0000	<신설>

□ 쟁점 이유

- 2022 8485.90-0000에 대해 2021년 6개의 HSK가 연계되며, 8466.94-0000(6.0%), 8475.90-9000(5.4%), 8479.90-9090(2.5%) 3개 HSK가 양허품목이며 양허 내용이 다 다르므로, 3개의 대시 라인을 설정하여야 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1

- 2022 8485.80-0000에 연계되는 2021 8479.89-9070가 미양허이므로, 논리상 해당 부분품인 2021 8479.90-9090도 미양허여야 하는데도, 현행 양허표에서 8479.90-9090이 2.5%로 양허되어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미양허, 부분품은 양허인 결과가 되고 있음.

○ 특이사항 2

- 2022 8485.90-0000에 연계되는 2021 8479.90-9090이 양허대상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함.

□ 작성 결과

작성 결과			
품목번호	품 명(2022)	품 명(2021)	세율(%)
8485900000	부분품	<신설>	
	- 금속류	<신설>	6.0
	- 유리류	<신설>	5.4
	- 2021년까지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던 것	<신설>	2.5

6. 신설 2852.90-9000 : 2015 HSK로 표기된 품명

□ 연계표

연계표			
2021 HSK			2022 HSK
2852.90-1000	2.75	ex	2852.90-9000
2852.90-2000	4.55	ex	2852.90-9000
2852.90-4000	미	ex	2852.90-9000

□ 2021 2852.90-1000, 2852.90-2000 현황

- 아래 그림과 같이 HSK 내에 다시 HSK로 표시된 형태임

- 이 중에서 2852.90-2000의 대시 라인에 표시된 HSK는 2015년 기준 HSK임.

2021 2852.90-1000, 2852.90-2000			
품목번호	품 명(2022)	품 명(2021)	세율(%)
2852901000	<삭제>	소호 제2830.90호, 제2835.39호, 제2842.10.900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제2853.90.2000호의 것	
	<삭제>	- 제2835.39.1000호, 제2835.39.2000호, 제2835.39.9000호, 제2849.90.9090호, 제2850.00.1000호, 제2850.00.2000호, 제2850.00.3000호, 제2850.00.4000호, 제2850.00.5000호의 것	2.75
2852902000	<삭제>	제2842.10.1000호, 제2934.99.2000호, 제2934.99.9090호, 소호 제3201.90호, 제3824.04호부터 제3824.0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2100호, 제3824.99.2290호부터 제3824.99.9090호까지의 것	
	<삭제>	- 제3824.90.2100호, 제3824.90.2200호, 제3824.90.3100호, 제3824.90.3200호, 제3824.90.3300호, 제3824.90.3400호, 제3824.90.3500호의 것	4.55

□ 쟁점 이유

- 2022 신설 2852.90-9000은 2021 2개의 HSK를 대시 라인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 중 2015년 HSK로 표시된 부분을 2022년 기준 HSK나 실품명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HSK로 표기된 품명의 변환 분석

- 아래에서 2021 ex로 표시된 품목은 HSK의 일부분만 해당하므로 HSK로 표시할 수 없으며, 결국 2015년 HSK 상의 실품명을 적용하여야 함.

<표 9> 2015년 HSK로 표기된 품명의 변환 분석

2021 양허표 (2015년 HSK)	2021		2022	비고
	ex	HSK		
제3824.90.2100호		3824.99-2100	제3824.99-2100호	
제3824.90.2200호		3824.99-2900	제3824.99-2900호	
제3824.90.3100호	ex	3824.99-399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3824.99-3990의 일부분만 해당하므로, 2015 HSK 품명으로 표기
제3824.90.3200호	ex	3824.99-399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3824.99-3990의 일부분만 해당하므로, 2015 HSK 품명으로 표기

	2021		2022	비고
	ex	HSK		
제3824.90.3300호	ex	3824.99-399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3824.99-3990의 일부분만 해당하므로, 2015 HSK 품명으로 표기
제3824.90.3400호	ex	3824.99-399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3824.99-3990의 일부분만 해당하므로, 2015 HSK 품명으로 표기
제3824.90.3500호		3824.99-3100	제3824.99-3100호	

□ 2015-2017 연계표

2015-2017 HSK 연계표					
2015 VERSION			2017 VERSION		
	3824901000	삭제		3824991000	신설
	3824902100	삭제		3824992100	신설
	3824902200	삭제		3824992900	신설
	3824902410	삭제		3824992210	신설
	3824902490	삭제		3824992290	신설
	382490310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20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30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40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500	삭제		3824993100	신설
	382490360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70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80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911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919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92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3824903930	삭제		3824993910	신설
ex	3824903990	삭제		3824910000	신설
ex	3824903990	삭제	ex	3824993990	신설

□ 작성 결과

- 대시 라인의 품명이 아래와 같이 복잡하고 긴 형태가 됨.

작성 결과			
품목번호	품 명 (2022)	품 명 (2021)	세율(%)
2852909000	기타	<신설>	
	- 제2835.39.1000호, 제2835.39.2000호, 제2835.39.9000호, 제2849.90.9090호, 제2850.00.1000호, 제2850.00.2000호, 제2850.00.3000호, 제2850.00.4000호, 제2850.00.5000호의 것	<신설>	2.75
	- 제3824.99.2100호, 제3824.99.2900호 오-알릴(탄수소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릴을 포함한다) 알릴(에틸, 메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로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오-알릴(탄수소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릴을 포함한다) 에, 에-디알릴(에틸, 메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에스-2-디알릴(에틸, 메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록시 알릴(에틸, 메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로인(데이트로)와 이들의 오-알릴(탄수소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릴을 포함한다)에스 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릴(탄수소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릴을 포함한다) 알릴(에틸, 메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제3824.99.3100호의 것	<신설>	4.55

7. 신설 8542.31-4000 등 5개 HSK¹⁹⁾

□ 연계표²⁰⁾

2021					2022	
8542.31-4010	<삭제>	[미]	[미]	ex	8542.31-4000	<신설>
8542.31-4020	<삭제>	[미]	[미]	ex	8542.31-4000	<신설>
8542.31-4030	<삭제>	<양>	B	ex	8542.31-4000	<신설>
8542.31-4040	<삭제>	[미]	[미]	ex	8542.31-4000	<신설>
8542.31-4050	<삭제>	[미]	[미]	ex	8542.31-4000	<신설>
8542.31-4060	<삭제>	<양>	B	ex	8542.31-4000	<신설>
8542.31-4090	<삭제>	<양>	B	ex	8542.31-4000	<신설>

□ 2021 규정 현황

8542.31-4030			
품목	번호	품 명	세율(%)
8542	91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소호 제8517.69호의 것 중 수신기기의 것(호출용·경보용·폐미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2.0
		- 소호 제8517.69호의 것(수신기기의 것과 영상전화기의 것을 제외한다)	2.2

8542.31-4060			
품목	번호	품 명	세율(%)
8542	914060	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29호·제8430호·제8443.99호·8470호·제8471호·제8472호·제9025호·제9030호·제9504호의 기제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8443.99.3000호의 기제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5
		- 제8472호의 기제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단, 현금자동거래기용 평판디스플레이와 현금자동거래기용 인쇄 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타자기, 워드프로세서(마신의 것은 제외한다)	2.5
		- 제9030호의 기제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제9030.89.0000호의 기제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 - 전자기 센서	2.3
		- - - 기타(센서를 제외한다)	2.3
		- - 기타(단, 소호 9030.82호의 것은 제외한다)	2.3

19)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로서, 8542.31-4000, 8542.32-4000, 8542.33-4000, 8542.39-4000, 8542.90-0000의 5개 HSK가 모두 동일한 형태이므로, 1개를 작성하여 나머지 4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주14 참조)

20) “세율(%)”열의 “B”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부여한 더미문자로서, 2021 HSK에서 이미 대시 라인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

8542.31-4090			
품목	번호	품 명	세율(%)
8542	314090	기타	
		-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4.0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6.0
		- 제8464호의 기계용	5.4
		- 제8476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6
		- 정류기기의 것(자동차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4.0
		- 무정전 전원장치의 것(자동차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4.0
		- 정지형 변환기(정류기기, 인버터, 빔대리출전기, 파워팩, 어댑터, 자동차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파워세플라이유닛,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4.0
		- 제8504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제8504.50호의 자동차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6
		- 제8518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인쇄회로조립품(제8518.90.1000호·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6
		-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6
		-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은 제외한다)	
		-- 레이더기기의 것	4.0
		--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항측조절기의 것	5.6
		-- 라디오 방송용,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4.0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5.6
		--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5.2
		--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	
		--- 콜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천연색용의 것에 한정한다)	4.8
		---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천연색용의 것에 한정한다)	4.8
		---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천연색용의 것에 한정한다)	4.8
		--- 기타(천연색용의 것에 한하여, 천연색 튜브, 영상투사기를 스크린은 제외한다)	4.8
		---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흑백이나 단색 튜브, 영상투사기를 스크린은 제외한다)	5.2
		-- 기타	5.6
		- 제853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6
		- 제8531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단 소호 제8531.10호 및 소호 제853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6
		- 제8535.9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카세트와 타이핑은 제외한다)	5.6
		- 제8536.9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은 제외한다)	4.0
		- 제8535·제8536·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자동 차단기의 것	5.2
		-- 계전기의 것	4.0
		-- 제어반의 것	5.6
		-- 기타	5.6
		- 제9025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단, 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온도계 및 제9025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6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 광학식 기기	
		--- 센서	5.6
		--- 기타	5.4
		-- 기타의 기기	5.6
		- 제9031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나 레티클 검사용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은 제외한다)	5.6
		- 제9040의 기계·기기·장치·장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제9040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6.0

□쟁점 이유

- 2022 8542.31-4000에는 2021년 7개의 HSK가 연계되며, 이 중 미양허인 것을 제외하고 3개의 양허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표시하여야 함.

- 양허표 내용을 합쳐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길고 복잡한 형태가 됨.

- 양허표 내에 품명이 HSK로 표시된 부분은 개별로 검토하여 2022 HSK와 품명으로 변환하여야 함.

□ 2022 HSK와 품명으로의 변환 분석

- 현행 2021에 HSK로 표시된 품명의 포함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2022 HSK로 표시하고, HSK로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실품명으로 변환하여 표시하여야 함.

- 다음 페이지 변환 분석 참조

○ 변환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결과적으로 3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함.

<표 10> 8542.31-4000 등(5개)의 변환 분석

번호	8542.31-4000 등	세율	확인 및 검토	품명 개정 방향
1	-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022년에 8517의 범위에 8524 일부가 포함되지만, 아래에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관	
2	- - 소호 제8517.69호의 것 중 수신기기의 것(호출용·경보용·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1.98	8517.69의 개정은 8517.69 범위 내이므로 무관	
3	- - 소호 제8517.69호의 것(수신기기의 것과 영상전화기의 것을 제외한다)	2.20	8517.69의 개정은 8517.69 범위 내이므로 무관	
4	- 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29호·제8430호·제8443.99호·8470호·제8471호·제8472호·제9026호·제9030호·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8428 개정이 있으나 8428 범위 내이므로 무관 8443.99 개정이 있으나 8443.99 범위 내이므로 무관 8470, 8471, 8472, 9026, 9030 개정이 있으나 8470, 8471, 8472, 9026, 9030 범위 내이므로 무관	
5	- - 8443.99.9000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50	8443.99-9000의 범위가 2022에 넓어졌으므로, 당초 양허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2022에 넓어진 품목을 제외하여야 함(2021년 HSK 기준 품명으로 변환할 필요 있음).	(품명 개정안) - - 제8443.99.9000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택시밀리의 것과 텔레프린터의 것은 제외한다)
6	- - 제8472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단, 현금자동처리기용 평판디스플레이와 현금자동처리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타자기,	2.50	8472의 개정이 있으나 8472 범위 내이므로 무관, 8534는 개정이 없었으므로 무관	

	8542.31-4000 등	세율	확인 및 검토	품명 개정 방향
	워드프로세싱머신의 것은 제외한다)			
7	- - 제9030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9030의 개정이 있으나 9030 범위 내이므로 무관	
8	- - - 제9030.89.0000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개정 없음	
9	- - - - 전자기 센서	2.31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10	- - - - 기타(센서를 제외한다)	2.31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11	- - - 기타(단, 소호 9030.82호의 것은 제외한다)	2.31	개정 없음	
12	- 기타			
13	- -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4.00	일부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호 내의 범위이므로 무관	
14	-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6.00	8463.90-1000이 8485.10-0000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반영 필요	- - 제8462호, 제8463호, 제8485.10.0000호의 기계용
15	- - 제8464호의 기계용	5.36	개정 없음	
16	- - 제8476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60	일부 개정이 있으나 동일 호 내이므로 무관	
17	- - 정류기기의 것(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4.0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8471.60이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동일 소호 내에서의 개정이므로 무관	
18	- - 무정전 전원장치의 것(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4.0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8471.60이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동일 소호 내에서의 개정이므로 무관	
19	- - 정지형 변환기(정류기기, 인버터, 밧데리충전기, 파워팩, 어댑터,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유닛,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4.0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번호	8542.31-4000 등	세율	확인 및 검토	품명 개정 방향
20	- 제8504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60	8504, 8534 개정 없음	
21	- 제8518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인쇄회로조립품(제8518.90.1000호·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60	8518 개정 없음	
22	-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60	8519 개정이 있으나 8519 범위 내이므로 무관 8521 개정 없음	
23	-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2021 8529.90이며, 미양허 품목(2021 8529.90-9910)을 제외해 주어야 함(2021 8529.90-9921과 8529.90-9929는 2022년에 8529.90을 벗어난 8524로 분리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은 제외한다) <u>[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디지털카메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u>
24	- 레이더기기의 것	4.0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25	-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조절기의 것	5.6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26	- 라디오 방송용,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의 것	4.0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27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5.6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28	-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5.2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29	- 텔레비전 수신기기의 것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8542.31-4000 등	세율	확인 및 검토	품명 개정 방향
30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천연색용의 것에 한한다)	4.8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31	-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천연색용의 것에 한한다)	4.8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32	-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천연색용의 것에 한한다)	4.8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33	- 기타(천연색용의 것에 한하며, 천연색 튜너,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제외한다)	4.8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34	-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흑백이나 단색튜너,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제외한다)	5.2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35	- 기타	5.6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36	- 제853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5.60	8530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8530 범위 내이므로 무관	
37	- 제8531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단 소호 제8531.10호 및 소호 제853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60	8531.10 개정이 있으나 8531.10 범위 내이므로 무관	
38	- 제8535.9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커넥터와 터미널은 제외한다)	5.60	개정 없음	
39	- 제8536.9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은 제외한다)	4.00	개정 없음	
40	- 제8535·제8536·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537 개정이 있으나 8537 범위 내이므로 무관	
41	- 자동 차단기의 것	5.2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42	- 계전기의 것	4.0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번호	8542.31-4000 등	세율	확인 및 검토	품명 개정 방향
43	- - - 제어반의 것	5.6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44	- - - 기타	5.6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45	- - 제9025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단, 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온도계 및 제9025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60	9025.80 개정이 있으나 9025.80 범위 내이므로 무관	
46	-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47	- - - 광학식 기기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48	- - - - 센서	5.6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49	- - - - 기타	5.36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50	- - - 기타의 기기	5.60	품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무관	
51	- - - 제9031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나 레티클 검사용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은 제외한다)	5.60	9031 개정이 있으나 9031 범위 내이므로 무관	
52	-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제90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00	9033을 규정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9033은 개정이 없으므로 무관	

품목번호	품 명(2022)	품 명(2021)	세율(%)
8542314000	복합부품 집적회로(MCUs)	<신설>	
	-- 제86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신설>	
	--- 소호 제8617.65호의 것 중 수신기기의 것(하중용 경보용 레미콘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8
	--- 소호 제8617.65호의 것(수신기기의 것과 음성전화기의 것을 제외한다)	<신설>	2.20
	-- 제8425호, 제8426호, 제8428호, 제8429호, 제8430호, 제8443.95호, 제8470호, 제8471호, 제8472호, 제8476호, 제8480호, 제8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신설>	
	-- 제8443.95, 9000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복사기의 것과 텔레프린터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2.50
	-- 제8472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단, 항공자동차기용 엔진디스플레이와 항공자동차기용 인쇄회로기판(제8548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타자기, 워드프로세서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2.50
	-- 제9030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신설>	
	--- 제9030.08, 0000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신설>	
	---- 전자기 센서	<신설>	2.31
	---- 기타(센서를 제외한다)	<신설>	2.31
	--- 기타(단, 소호 9030.82호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2.31
	- 기타	<신설>	
	-- 제8455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신설>	4.00
	-- 제8462호, 제8463호, 제8465, 10, 000호의 기계용	<신설>	5.00
	-- 제8464호의 기계용	<신설>	5.35
	-- 제8476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신설>	5.60
	-- 항공기기의 것(자동차용기기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4.00

작성 결과(계속)

-- 무정전 전원장치의 것(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4.00
-- 정지형 변환기(정류기기, 인버터, 변태리출전기, 파워팩, 어댑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유닛,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4.00
-- 제8504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 40호·제8504, 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5.60
-- 제8518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인쇄회로조립품(제8518, 90, 1000호·제8518, 29, 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5.60
--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신설>	5.60
--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은 제외한다)[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디지털 카메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신설>	
--- 레이더기기의 것	<신설>	4.00
---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조절기의 것	<신설>	5.60
--- 라디오 방송용,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신설>	4.00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신설>	5.60
---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신설>	5.20
---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	<신설>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현연색용의 것에 한한다)	<신설>	4.80
----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현연색용의 것에 한한다)	<신설>	4.80
----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현연색용의 것에 한한다)	<신설>	4.80

작성 결과(계속)

---- 기타(현연색용의 것에 한하며, 현연색 튜너,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제외한다)	<신설>	4.80
----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흑백이나 단색튜너,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제외한다)	<신설>	5.20
--- 기타	<신설>	5.60
-- 제853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신설>	5.60
-- 제8531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단 소호 제8531, 10호 및 소호 제8531, 20호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5.60
-- 제8535, 9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커넥터와 터미널은 제외한다)	<신설>	5.60
-- 제8536, 90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은 제외한다)	<신설>	4.00
-- 제8535·제8536·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신설>	
--- 자동 차단기의 것	<신설>	5.20
--- 계전기의 것	<신설>	4.00
--- 제어반의 것	<신설>	5.60
--- 기타	<신설>	5.60
-- 제9025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온도계 및 제9025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신설>	5.60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신설>	
--- 광학식 기기	<신설>	
---- 센서	<신설>	5.60
---- 기타	<신설>	5.36
--- 기타의 기기	<신설>	5.60
--- 제9031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나 레티클 검사용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은 제외한다)	<신설>	5.60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제90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신설>	6.00

8. 연계표 확정 후 수행할 부분

□ 2022 HSK 개정에 따른 2021-2022 연계표가 확정되지 않은
다음 부분은 향후 연계표 확정 후 수행 필요

- 신설 8524(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신설 8549(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VII. 주요 쟁점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1. 쟁점 개요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특징

- 양허품목의 관세율이 모두 “0%”로 동일하여 쟁점이 많지는 않으며, 일부 품목이 양허와 미양허가 섞여 포함된 경우가 있음.

2. 신설 1602.90-9000

□ 연계표

2021					2022		
ex	0410.00-9000	<삭제> (양)	0		ex	1602.90-9000	[변경]
	1602.90-9000	[변경] (미)			ex	1602.90-9000	[변경]
ex	1704.90-9000	[변경] (양)	0		ex	1602.90-9000	[변경]
ex	1806.90-9090	[변경] (양)	0		ex	1602.90-9000	[변경]
ex	1901.90-9099	[변경] (미)			ex	1602.90-9000	[변경]
ex	1904.90-9000	[변경] (미)			ex	1602.90-9000	[변경]
ex	2106.90-9099	[변경] (양)	0		ex	1602.90-9000	[변경]

□ 쟁점 이유

- 2022 1602.90-9000²¹⁾에 대해 2021년 7개 HSK가 연계되고,
이 중 미양허 라인을 제외한 4개를 대시 라인으로 설정하여야 함.

21) 제1602호의 품명이 2021년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에서 2022년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곤충”으로 개정됨으로써 다른 7개 HSK에 흠어져 있던 “곤충의 것”이 새로이 연계됨.

- 이 경우 대시 라인의 품명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1) HSK로 표시하는 방법 (2) 실품명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작성 결과

- 2022 HSK 개정되어 HSK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HSK로 표시

작성 결과				
1602	90	9000	기타	<신설>
			- 곤충의 것	<신설>
			- 제1704.90.9000호의 것	<신설>
			- 제1806.90.9090호의 것	<신설>
			- 제2106.90.9099호의 것	<신설>

3. 연계표 확정 후 수행할 부분

□ 2022 HSK 개정에 따른 2021-2022 연계표가 확정되지 않은 다음 부분은 향후 연계표 확정 후 수행 필요

- 신설 8524(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신설 8541.5(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 신설 8549(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VIII. 주요 쟁점 : GSTP, TNDC²²⁾

1. GSTP, TNDC 현황

- 양허표를 HSK 10단위로 변환한 결과

<표 11> GSTP, TNDC의 10단위 변환 결과

구 분	특 징	HSK 5~6단위	변환 후	
			HSK 10단위	대시 품목
GSTP	HS 6단위로 규정	26	30	0
TNDC	HS 5~6단위로 규정	12	17	9

2. 쟁점 : 규정 형식

(1안) HS 5~6단위 규정 방식(현행 유지)

(2안) HSK 10단위 규정 방식(10단위로 변환하여 적용)

<표 12> GSTP, TNDC의 규정 방식 찬반론

구 분	(1안) 찬성론	(2안) 찬성론
내 용	- 협정 원안 형식 준수 - 현행 방식에 익숙 - 수요자가 직접 변환하여 적용 필요	- 수요자가 10단위로 변환절차 없이 직접 적용 - 잘못된 10단위 변환 방지

22) WTO 별표 1 나, 별표 3(APTA) 다 및 라, 국제협력관세는 2022년 양허세율표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별도 쟁점은 없었음.

IX. 결 론

1. 연구 요약 : 초안 제출 완료

- 9개 양허표에 대한 엑셀 초안 제출 완료

2. 향후 방향 : 보완

- 연계표 확정본 반영
 - 2022 HSK와 2021-2022 연계표를 “주어진 것”²³⁾으로 적용하였으므로, 2022 HSK와 2021-2022 연계표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그 오류 내용이 그대로 적용²⁴⁾
 - 연구용역 종료일(2021.9.19.) 현재 2021-2022 연계표가 확정되지 않고 추가로 수정될 예정이므로, 추가 확정 또는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
 - 기획재정부 2021년 9월 2일본 연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 표와 같으며, 향후 확정되면 확정본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23) “what is given as true”

24) 기획재정부 2021-2022 연계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증된 본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내부 참조 자료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므로, 오류가 있을 경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표 13> 연계표 확정 후 수행할 부분

구 분	별표 1 가	APTA 가	최빈 양허
신설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예정	예정	예정
신설 8541.5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예정	X	예정
신설 8549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예정	예정	예정

- 의견 조회 및 조회 결과 적용
 - 도출된 쟁점 중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전문기관 등(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등)에 의견조회하여 확인 후 적용 필요
 - 의견조회 필요 주제

<표 14> 의견조회 필요 주제

구 분	2022 HSK	품 목	검토 관점
별표 1 가	8549.21-1000 등 18개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세부 품목	본 연구진이 조사한 2021 연계 HSK의 정확성 및 적용 가능성
APTA 가	순삭제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 드라이어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 드라이어”의 품목분류 정확성 확인(제8486호인지 여부, 제8486호의 해당 10단위 HSK)

○ Stata에 의한 검증 수행

- 검증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 양허표 최종 포맷 작성

- 초안에서 양허표만 남기고 삭제

- HSK 표기 수정

- 예: 0101.00.0000 → 0101.00-0000

- 대시 품목의 “-” 표기 수정 등

- “ - ” → “- ”로 수정 예정
- 엑셀에서 “-” 앞에 작은 따옴표(‘)를 포함시키면 함수(function)로 처리되지 않아 데이터 처리가 가능²⁵⁾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2 HSK(안) - 2021년 9월 2일본

기획재정부 2021-2022 연계표(안) - 2021년 9월 2일본

관세청, HS 해설서 2017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일부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31662호, 2021. 5. 4.,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일부개정] [별표]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harmonizedsystem.wcoomdpublishings.org/> (WTO HS)

<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HS Navigation)

<http://kastata.org/html/sub01-02.asp> (한국STATA학회)

<https://jat.co.kr/> (Jason TG)

25) 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별법 시행령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FTA 양허세율표에서 적용하는 방식임.

<붙임 1> HSK 개정 경과 및 연혁

<표 15> HS 개정 경과

구 분	개정 개요	개정 품목	
1차 (1992. 1. 1.)	1988년 1월 HS도입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 HS 1519호에 분류되는 유지중 HS6단위 2개 소호를 하나의 호로 통합 - 호의 용어 개념 보완	4단위	1,241(동일)
		6단위	5,019→5,018(감소)
2차 (1996. 1. 1.)	1983년 이후 10년간 신규 개발상품, UN기구의 요청에 의한 마약류와 환경관련 물질 특개 등	4단위	1,241(동일)
		6단위	5,018개→5,113개(증가)
3차 (2002. 1. 1.)	기술진보에 따른 신상품, 무역량 감소 및 증가에 따른 HS개정, HS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범위의 명확화 등	4단위	1,241→1,244(증가)
		6단위	5,113→5,225(증가)
		註	419→444(증가)
4차 (2007. 1. 1.)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제물질 및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호(또는 소호)를 신설하였으며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용어정의 및 분류 기준을 보완	4단위	1,244→1,221(감소)
		6단위	5,225→5,052(감소)
		註	432→439(증가)
5차 (2012. 1. 1.)	UN식량농업기구(FAO)가 전 세계 식량자원의 생산, 수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현행 교역량 중심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제로 대폭 개정 등	4단위	1,221→1,224(증가)
		6단위	5,052→5,205(증가)
		註	439→447(증가)
6차 (2017. 1. 1.)	식품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식량농업기구의 제안 반영, 화학무기협약 관련 수출입통계 물질의 자료수집 및 관리를 위한 물질 신설,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POPs), 위험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관련 통제 물질 신설 등	4단위	1,224→1,222(감소)
		6단위	5,205→5,387(증가)
		註	447→462(증가)
7차 (예정) (2022. 1.1) ²⁶⁾	바젤협약의 요청에 따른 산업폐기물(e-waste)의 특개, 다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품목분류표 개정(식용 곤충, 목제품, 오존층 파괴물질, 온실가스, 화학무기원료, 마약 원료 등, 태양열 및 태양광 사용제품), 새로운 형태의담배 제품(궐련형 전자담배 등) 등, 군민 양용(dualuse) 물품, 생물학적 안전케비닛, 동결건조기, 고속카메라와 야간 감시카메라 등, LED 제품의 특개(제8539호, 제9405호 등), 스마트폰(제8517.13호), 평판디스플레이모듈(제8524호), 3D 프린터(제8485호) 등, 제8541호 반도체의 범위 확대,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transducer) 개념 도입, 무인기(제8806호) 신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소호 신설 등	4단위	1,222→1,228(증가)
		6단위	5,387→5,612(증가)
		註	462→487(증가)

<표 16> HS 및 HSK 개정 연혁

구 분	시행일자	HS · HSK				비 고
		10단위	증감	4단위	6단위	
제정(재무부고시)	1987. 1. 1	10,183	-	1,241	5,019	
시행(1차 개정)	1988. 1. 1	10,205	+22	1,241	5,019	
2차 개정	1989. 1. 1	10,241	+36	1,241	5,019	
3차 개정	1990. 1. 1	10,274	+33	1,241	5,019	
4차 개정 (제1차 HS협약 개정)	1992. 1. 1	10,322	+48	1,241	5,018	
5차 개정	1993. 1. 1	10,417	+95	1,241	5,018	관세율표 개정
6차 개정	1994. 1. 1	10,502	+85	1,241	5,018	
7차 개정 (제2차 HS협약 개정)	1996. 1. 1	10,859	+357	1,241	5,113	관세율표 개정
8차 개정	1997. 1. 1	10,904	+45	1,241	5,113	관세율표 개정
9차 개정 (ITA협정 이행)	1997. 7. 1	11,012	+108	1,241	5,113	
10차 개정	1999. 1. 1	11,096	+84	1,241	5,113	관세율표 개정
11차 개정	2000. 1. 1	11,170	+74	1,241	5,113	
12차 개정	2001. 4. 9	11,176	+6	1,241	5,113	관세율표 개정
13차 개정 (제3차 HS협약 개정)	2002. 1. 1	11,237	+61	1,244	5,225	관세율표 개정
14차 개정	2003. 1. 1	11,261	+24	1,244	5,225	관세율표 개정
15차 개정 (제4차 HS협약 개정)	2007. 1. 1	11,703	+442	1,221	5,052	관세율표 개정
16차 개정	2008. 1. 1	11,729	+26	1,221	5,052	
17차 개정	2009. 1. 1	11,881	+152	1,221	5,052	
18차 개정	2011. 1. 1	11,900	+19	1,221	5,052	관세율표 개정
19차 개정 (제5차 HS협약 개정)	2012. 1. 1	12,232	+332	1,224	5,205	관세율표 개정
20차 개정	2013. 1. 1	12,233	+1	1,224	5,205	관세율표 개정
21차 개정	2014. 1. 1	12,243	+10	1,224	5,205	
22차 개정	2015. 1. 1	12,243	0	1,224	5,205	품명 개정
23차 개정 (제6차 HS협약 개정)	2017. 1. 1	12,232	-11	1,222	5,387	관세율표 개정
24차 개정	2019.10. 1	12,234	+2	1,222	5,387	관세율표 개정
25차 개정	2021. 1. 1	12,242	+8	1,222	5,387	
26차 개정(예정) (제7차 HS협약 개정)	2022. 1. 1	(예정)	(예정)	1,228	5,612	관세율표 개정

26) 2021년 6월 기획재정부의 개정(안)

〈붙임 2〉 2022 HSK 10단위 개정 내역 분석

1. 2022 HSK 10단위 개정 내역 요약²⁷⁾

<표 17> 2022 HSK 10단위 개정 내역 요약

구 분	HSK 수
2021.01.01.	12,242
신설	1,390
삭제	2,578
2022.01.01.	11,054

2. 2022 HSK 류별 10단위 개정 상세 내역

<표 18> 2022 HSK 10단위 개정 내역(류별)

류	현행 (2021)	개정(2022)				
		신설	삭제	변경	증감	결과 수
01	71	3	8	2	(5)	66
02	117	5	17	5	(12)	105
03	481	82	197	69	(115)	366
04	68	9	14	1	(5)	63
05	68	7	27	0	(20)	48
06	77	6	57	1	(51)	26
07	148	9	8	8	1	149
08	88	5	5	2	0	88
09	52	4	10	1	(6)	46
10	44	0	0	2	0	44
11	47	1	2	0	(1)	46
12	190	4	1	8	3	193
13	34	2	10	0	(8)	26
14	19	2	5	3	(3)	16
15	105	9	9	1	0	105
16	112	30	64	0	(34)	78
17	34	0	0	4	0	34
18	33	0	0	2	0	33
19	52	0	0	1	0	52
20	115	2	0	11	2	117

27) 여기의 집계는 2021년 9월 2일 기재부 2022 HSK 개정(안)에 따름.

류	현행 (2021)	개정(2022)				
		신설	삭제	변경	증감	결과 수
21	70	0	0	3	0	70
22	56	0	0	2	0	56
23	49	0	0	0	0	49
24	27	9	0	0	9	36
25	144	4	11	2	(7)	137
26	54	0	0	0	0	54
27	190	2	0	1	2	192
28	398	41	101	5	(60)	338
29	911	136	270	16	(134)	777
30	146	19	55	3	(36)	110
31	39	2	7	2	(5)	34
32	138	3	17	2	(14)	124
33	69	1	6	2	(5)	64
34	52	9	11	0	(2)	50
35	58	3	15	0	(12)	46
36	22	8	15	0	(7)	15
37	154	28	105	0	(77)	77
38	235	67	75	4	(8)	227
39	238	17	34	1	(17)	221
40	141	8	23	8	(15)	126
41	64	0	0	0	0	64
42	117	11	57	0	(46)	71
43	55	1	12	3	(11)	44
44	317	57	53	55	4	321
45	7	0	0	0	0	7
46	20	5	11	0	(6)	14
47	29	1	3	0	(2)	27
48	221	9	40	5	(31)	190
49	35	3	4	0	(1)	34
50	31	2	8	1	(6)	25
51	55	0	2	0	(2)	53
52	181	36	72	0	(36)	145
53	43	2	5	1	(3)	40
54	147	10	24	1	(14)	133
55	231	40	117	0	(77)	154
56	49	2	5	0	(3)	46
57	22	4	2	2	2	24
58	59	7	23	0	(16)	43
59	30	1	2	3	(1)	29
60	49	0	0	0	0	49
61	152	9	20	1	(11)	141
62	169	39	43	0	(4)	165
63	64	2	4	0	(2)	62
64	52	5	11	0	(6)	46

류	현행 (2021)	개정(2022)				
		신설	삭제	변경	증감	결과 수
65	16	1	4	0	(3)	13
66	11	0	3	0	(3)	8
67	21	1	7	0	(6)	15
68	87	11	28	3	(17)	70
69	86	4	23	2	(19)	67
70	170	26	9	24	17	187
71	115	10	19	1	(9)	106
72	310	0	0	29	0	310
73	210	0	0	4	0	210
74	87	5	7	0	(2)	85
75	27	0	0	0	0	27
76	60	0	0	0	0	60
78	19	0	1	0	(1)	18
79	18	0	0	0	0	18
80	14	0	1	0	(1)	13
81	88	28	21	0	7	95
82	143	5	30	3	(25)	118
83	53	0	2	3	(2)	51
84	1,263	122	199	64	(77)	1,186
85	830	194	294	27	(100)	730
86	41	0	0	1	0	41
87	214	41	2	0	39	253
88	48	22	13	3	9	57
89	42	11	3	1	8	50
90	414	28	91	6	(63)	351
91	79	6	15	4	(9)	70
92	55	5	23	0	(18)	37
93	81	0	0	1	0	81
94	93	40	49	0	(9)	84
95	93	9	5	1	4	97
96	94	5	17	2	(12)	82
97	15	33	15	0	18	33
합계	12,242	1,390	2,578	423	(1,188)	11,054